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 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4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충전인프라 부족과 장시간 충전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함

※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: 급속 1시간, 완속 14시간

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
다.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(산책길 63) 등 17개소에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에 충전시설 설치

기관명	내 용
구미시	사업부지 제공(공유재산 사용허가)
환경부	급속충전기 설치비용 100% 부담

라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- 2) 기간 : 2025. 4. ~ 12.
- 3) 설치대상지 :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(산책길 63) 등 17개소
※ 교통정책과 등 8개과 협의 완료
- 4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92기

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 : 환경부
- 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- 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※ 근거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제1항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시설 17개소 / 충전기 92기(급속)

구분	계	비고
대상시설(개소)	17	
충전기(대)	92	급속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5. 4. :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 신청
- 2) 2025. 5. : 공유재산 사용허가
- 3) 2025. 6. : 공사 착수
- 4) 2025. 12. :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구미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대상지

연번	구 분	총주차 면 수	수 량 (급 속)	담당부서	주 소
총계	17개소		92		
1	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	230	15	교통정책과	산책길 63
2	봉곡동 주차타워	130	8	교통정책과	봉곡동 284-5
3	국가산업3단지 다목적복합센터	150	10	교통정책과	진평동 644-6
4	산동읍행정복지센터	83	5	회계과	신당리 1718, 산96-2, 산96
5	공영주차장(고아)	107	6	교통정책과	고아읍 원호리 646
6	형곡동 복개천 공영주차장	167	4	교통정책과	형곡동 226
7	도량산림공원	24	1	공원녹지과	도량동 산 29
8	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	25	1	일자리경제과	구미중앙로7길4
9	금오산대주차장	792	8	금오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	남통동 132번지
10	선산봉황시장 공영주차장	34	1	일자리경제과	선산읍 남문로 27
11	오태동주민복지센터	10	1	임오동	금오대로22길 21
12	지산셋강생태공원	136	7	공원녹지과	지산동 310-4
13	오태공원	150	8	공원녹지과	임은동 227
14	공단동 노외주차장	239	12	투자유치과	공단동 153
15	단계천 공영주차장	154	3	교통정책과	선산읍 단계동길 52 (완전리 432)
16	지산동행정복지센터	15	1	지산동	선산대로 105
17	공영주차장(도개면)	22	1	교통정책과	도개면 궁기리 797-6

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
2 생략
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
4 생략, ② ~ ⑩ 생략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생략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

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~ ⑤ 생략

□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

① 생략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·확

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강 정 숙
	팀 장	이 성 익
	담 당 자	남 지 영 (480-5252)